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26일, 이춘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9.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춘석)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 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요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4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음(제32조제4항).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축산 분뇨 등 오염원인 새만금 상류지역 인근의 축사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2014년 5월 21일에 유효기간 3년으로 도입(법률 제12644호)되었음.

그러나, 정부와 토지소유자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보상합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 제12644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은 2024년 12월 3

1일까지 유효하게 됨.

그런데, 특별관리지역 중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공시지가 상승, 철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축사 매입 대상 53개 농가 중 22개 농가의 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임.

새만금사업 추진에 수질관리가 중요한 요인인 점,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입이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을 완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원택의원 및 이춘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